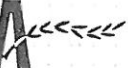


# 환경과 개발

박 동 균

1993. 6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조사국

# 환경과 개발



박 동 균

1993. 6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조사국

# 환경과 국제협력

## I.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환경보존·개선을 위한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인류의 생산·소비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의 자정능력(Purification Capacity)이 상대적으로 쇠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지난 1972년 인류환경에 관한 UN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환경문제를 선진국만의 문제이며 지구환경문제는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인식 및 주장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후 과학지식의 발전에 의해 환경의 파괴와 그에 따를 위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히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즉 1991년 1월 OECD 환경각료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1970년대 ‘인식과 개선’(Identify and Repair) 접근방법으로 부터 1980년대 ‘예견과 방지’(Anticipation and Prevent) 전략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장기적인 전력적계획과 긴밀한 국제협조를 바탕으로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해결이 범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국제환경관련기구들은 보다 정확한 환경파괴 현황 및 파급영향의 파악과 아울러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환경문제중 구체적인 행동방침이 국제협정으로 체결된 것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의 개도국은 아직 가입도 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외 모든 환경문제는 아직 인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겨우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병행하여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도 회원국 원조활동에 환경고려를 접목시키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조프로젝트·프로그램은 반드시 환경평가를 하도

록 권고하거나, 환경보존·개선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환경문제 대처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조활동을 권유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DAC의 노력에 부응하여 최근 많은 DAC 회원국들의 그들의 원조활동과 환경정책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DAC 회원국들은 대부분 환경정책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원조활동을 환경측면에서 통제하고, 또한 원조기관내에 환경문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원조활동과 관련된 환경정책을 담당케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구환경문제와 이에 대응한 국제적 노력을 살펴보고, 선진국이 그들의 원조활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의 「EARTH SUMMIT」가 시도되어진 계기는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민간환경선언」이 그 시초이다. 당시, 공해폭풍이 세계의 선진공업국을 덮치고 있어서 「지구호」에 걸친 환경보전의 본연적인 자세가 토의되어졌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경제성장의 궤결로서 발생한 공해가 심각화되어 대책에 고민하고 있었던 선진공업국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개도국과의 사이의 공해대책을 둘러싼 대립은 격해졌으며, 세계적인 환경보전을 추진해 가기 위한 합의와 대책확립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후, 석유위기와 세계경제 불황에 따라 선진공업국에서도 재차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부활됨과 더불어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개발 우선주의가 이따랐다. 이 동안에 세계 각지에서, 또한 지구적 규모에서 다양한 형태에서의 환경파괴가 심각화되어 갔다.

1970년 이후, 세계에서 2억 ha 가까운 산림과 약 4,800억톤의 표토가 유실되었으며 또한 1억 2천만 ha의 토지에서 사막화가 진행되었고, 수천에 이르는 야생 생물종이 절멸되었다. 이 20년 동안에 지구가 잃은 것은 너무나도 컸다. 동기간 20년 동안에 GNP는 약 3.1조달러에서 약 20조달러라는 명목(추정)으로 약 7배, 실질적으로도 2배

이상까지 신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추구되어진 경제성장이 빈곤을 해결된 것은 아니다. 1950년 이후 세계의 생산고는 5배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이라는 방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조건에 관한 어떠한 타당한 정의에 비추어도 심한 영양실조, 문맹, 질병, 높은 유아사망율, 짧은 평균수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맥나마라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정의한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 2. 1. 지구 환경문제의 유형

먼저 우리는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지구 환경문제는 몇 가지 타입의 환경문제의 복합적 현상이며, 개발 공해문제 중심이었던 1972년의 스톡홀름회의 당시와는 아주 다른 세계경제의 범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현실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는 다섯가지 type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어느 나라에 걸친 경제활동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이 다른 나라의 환경에 손해를 미치는 케이스, 즉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이다. 둘째는 「공해수출」로 불리우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지역에 대한 기업진출 또는 직접투자에 따르는 환경파괴다. 셋째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관계와 무역구조에서 생겨나는 환경파괴다. 넷째는 일부 개도국에서 보여지는 빈곤이 환경파괴를 낳고, 환경파괴가 빈곤을 재촉한다고 하는 악순환 요소가 진행되는 타입의 환경파괴다. 다섯째는 “오염되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인식인 까닭에 결과적으로 오염의 원인자가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타입의 환경파괴다.

첫째 및 둘째 유형의 환경파괴가 종래 한 국가안에서 생기고 있었던 현상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공간적 스케일을 확대하여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셋째 및 넷째 타입의 환경파괴는 경제의 국제화로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따른 새로운 바탕의 지구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다섯째 타입

의 환경파괴는 인간활동의 수준이 지구의 재생능력을 넘는 단계에 도달한 것과 동시에, 자국 우선이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인 환경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한 “환경보존적 경제발전”이 대두되게 되었다. 국제연합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제언한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은 세계 경제의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바꾸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양립시키는 환경보전형 경제발전의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스터 브라운은 「지구백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란, 「차세대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 없이 스스로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회다」라고 정의하여 그 윤곽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지탱되는 사회며 한번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재생 사회로 옮겨 가는 동시에 생물학적 기반을 회복한 사회이다.

이것에 공감하는 바는 적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 특히 이행과정에 관해서는 아직 석연치 않은 점도 많아서 사람들의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실재의 모델은 없다. 또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속에서 한 국가만으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현대의 경제학은 유감스럽지만 이 과제에 전면적으로 응할 수 있는 회답을 바로 준비할 수 없다. 환경파괴가 전체로서 현재의 세계경제의 메카니즘 속에 짜넣어져 있는 근본에 문제의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지구 공공재로서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구적 스케일에서의 사회시스템을 확립코자 하는 시도는 현재의 세계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국제적 합의는 용이치 않다.

## 2. 2. 유럽의 신규 환경정책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유럽시민의 오랜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시행에 대한 EC의 법적 정치적 의지는 1987년 7월 발효된 유럽시장 단일화법(SEA)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동법 130조에는 EC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EC의 차원의 정책이 개별 회원국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이 원칙을 환경정책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보다는 EC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EC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개별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정책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수행될 경우 회원국간 환경기준이 상이해짐은 물론 환경오염의 국제적 문제(예 : 산업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하천오염 등)가 경시될 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 오염자 부담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 EC의 환경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보호의 기피와 손해비용을 내부화시키는 것이다. 즉 공해 야기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오염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행이 분분한 상황이나 공해 야기자가 공해방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해에 의한 손상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3)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EC의 환경유산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까지 손상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적 환경정책은 첫째, 공해 발생 원인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둘째, 공해유발 가능시설에 대한 사전 허가제 실시 셋째, 신상품 및 화학제품의 판매시 사전시험 및 통보절차 실시 넷째, 기술적 진보에 상응한 배기가스 기준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는 이 밖에도 사용되는 법률적 장치가 용이하게 적용되고 집행력이 있도록 하는 법적효율성원칙(The Principle of Legal Efficiency)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보호 기준의 목표달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최소비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st Effectiveness)등이 수록되어 있다.

## 2. 3. 국제적 대응

자연자원을 자본·소비재로 전환하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반드시 사용량 만큼의 환경악화를 초래하나 자연은 자연의 자정능력 한도내에서만 이를 치유한다. 과거 산업혁명이전과 같이 인류의 경제 활동량이나 인구가 적었던 시절에는 경제활동이 수반하는 환경 파괴는 지구자체의 회복력에 의해 다시 복원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인류의 경제활동도 활성화되면서 인간의 자원 이용량과 환경파괴가 누적되어, 이제 자연의 대순환체제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영향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에 파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유해폐기물, 야생동식물 멸종등이 그것으로서 각각의 환경문제는 상호복합·상승작용을 하여 환경파괴를 급속히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보면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850년 270~280ppmv(parts per million by volume)에서 현재 350ppmv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는 500ppmv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의 80%는 화석연료 연소(연간 200억톤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해, 나머지 20%는 산림파괴등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난 1985년 세계기후계획(World Climate Programme : WCP) 워크숍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온실기체의 증가, 그리고 온실화 현상의 복합적 효과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2배 증가에 상응할 것이며 이에따라 지구온도는 1.5~4.5℃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해수면은 20~140CM 상승하는 등 지구생태계, 농업, 수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1980년대에 들어 UN 산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노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악화의 영향은 지구전체에 미치는 반면 환경파괴는 일정 국경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간의 참여·합의·실천에 의해서만 환경관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이의 성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1> 지구 환경문제의 원인과 파급효과

| 환경문제         | 원 인                                                                                                                                                                                                                                                        | 파 급 영 향                                                                                                                                                                                        |
|--------------|------------------------------------------------------------------------------------------------------------------------------------------------------------------------------------------------------------------------------------------------------------|------------------------------------------------------------------------------------------------------------------------------------------------------------------------------------------------|
| 지구온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기온 상승시킴</li> <li>- 온실효과기여도 : 이산화탄소 50%, 메탄 18%, CFCs 14%, 산화질소 6%, 오존층 12%</li> <li>- 이산화탄소 증가의 80%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20%는 산림벌채·생물자원연소·부식 등에 의한 것임.</li> <li>- 온실가스의 2/3는 선진국에 의해 방출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상승 : 막대한 환경난민 발생 하수시스템의 역류, 염분에 의한 식수오염, 수인성질병 증가</li> <li>- 범지구적 기후변화 : 기상재해의 빈발, 가뭄, 홍작, 기근</li> <li>- 생태계의 변화, 산림파괴, 사회경제 환경변화</li> </ul>       |
| 오존층파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화불화탄소는 대기권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됨. 이때 유리된 염소원자가 자외선의 오존파괴작용을 촉진</li> <li>- 오존층파괴로 인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자외선의 양이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외선의 증가로 세포내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작용을 변화시켜 생물에 해를 줌.</li> <li>- 피부노화, 피부암, 백내장등 조래</li> <li>- 식물플랑크톤, 유충에 큰 위협을 주어 어획고 감소</li> <li>- 콩, 호박 등 식물작황 감소</li> </ul> |
| 산성비          | <p>유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기타 산성원인물질이 대기중에 방출되어 화학반응후 유산염, 초산염으로 전환되어 산성비가 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과 토양의 산성도 높임.</li> <li>- 수생 생태계의 손상</li> <li>- 농작물, 산림피해</li> <li>- 자재 부식</li> </ul>                                                               |
| 산림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경지조성, 화전경작 등을 위한 벌채</li> <li>- 상업용 목재 획득위한 벌채</li> <li>- 연료용 벌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중 이산화탄소 함유량 증대</li> <li>- 기후변화</li> <li>- 식량, 공업원료 공급에 악영향</li> <li>- 야생동물의 멸종</li> </ul>                                                           |
| 농지감소<br>토양악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 부족, 과도한 경작등으로 사막화 진행</li> <li>- 농지의 도시용지, 건설용지로 전환</li> <li>- 바람·물에 의한 침식</li> <li>- 염분 등에 의한 오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공업원료 생산감소</li> <li>- 생태계 파괴</li> <li>- 사막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또 다른 사막화 초래</li> </ul>                                                                       |

<표 1> 지구 환경문제의 원인과 파급효과

| 환경문제        | 원 인                                                                                                                                  | 파 급 영 향                                                                                                  |
|-------------|--------------------------------------------------------------------------------------------------------------------------------------|----------------------------------------------------------------------------------------------------------|
| 야생동식물<br>멸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대, 삼림 등 서식지 파괴</li> <li>- 과도한 포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섬유, 의약품 공급기반의 위축</li> <li>- 먹이사슬,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 저해</li> </ul> |
| 유해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폐기물 처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수출</li> <li>- 유해폐기물의 80% 이상이 OECD국에서 배출되며 상당부분이 개도국에 수출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의 국제이동이 규제되지 않을 경우 수입국의 건강·재산, 나아가 지구환경에 피해 줌</li> </ul>     |
| 화 학 물 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이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li> <li>- 화학물질은 OECD국 공업생산과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환경 오염</li> <li>- 아직 예견치 못한 건강·환경에의 악영향 가능성이 큼</li> </ul>      |
| 해 양 오 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해양에 방류됨.</li> <li>- 선박사고에 의한 기름유출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적조현상 야기</li> <li>- 해양생태계 파괴</li> </ul>                      |

이를 위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의 14개 분야의 행동계획은 ①대기보전책으로 국별 에너지 수요목표 설정,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촉진, 환경세 부과 ②산림보전을 위한 조림과 녹화 촉진, 국제기금창설 ③육상자원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④해양보호를 위해 연안국의 해양통합적 관리 인정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재원 문제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어젠다 21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요자금을 매년 1,250억 달러로 계산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①선진국 방위비 삭감분 전용 ②환경세 도입을 주장하고 이밖에 ③환경·채무스왑(Nature Debt Swap)에 의한 채무삭감 ④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⑤환경우표 발행 ⑥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재원조달방법, 대  
상사업결정 등에 관한 구체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우기 선진국측이 소요자금  
예산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자금규모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개도국 자금·기술이전의 활성화는 범세계적 협력을 도모하는 최대관건으로  
서 지구 환경악화의 주된 책임원인 선진국이 이를 여하히 실행하느냐가 환경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국제적대응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오존층 보호문제만 하더  
라도 그 원인이 인식된 이후 13년이나 지나서야 구속력을 가진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되었다. 그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973년 오존층파괴의 원인이  
CFCs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970년대 중에는 일부국에서 CFCs의 생산과 소비가 규  
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협상이 시작된 것은 1981년 UN 산하의 지  
구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 UNEP)이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연구반을  
구성하면서 부터이다. 이 작업의 결과 1985년 빈에서 오존층보호에 관한 유엔협상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로 최종 결실을 맺었다. 1989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의정서는  
가입국에서 1993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CFCs 생산을 동결하고 1999년까지 생산의  
50%를 감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비가입국에 대한 CFCs 수출을  
중단하고 1995년부터 CFCs 사용제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하였다.

이 의정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한 가장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행동방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의정서가 채택한 CFCs 생산·소비의 감소·동결예정표는 과학자들이 권고  
한 수준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둘째, CFCs의 대체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도 강력한 온실기체이다. 셋째, CFCs 방출·오존층 상태·의정서 이행의 감시  
등 민간한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제  
로서 대부분의 개도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일부 선진국만이  
대체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개도국은 이를 수입해야만 하는 반면, 개도국 부담을 경감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전·자금지원 등의 방법이 의정서에 포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표 2> 환경문제의 UN 및 국제기구의 대응

| 환경문제  | 국 제 적 대 응                                                                                                                                                                                                                                                                                                                                                                                                                                                                                                                                                                                                                                                                                                                                                                                                                                                                                                                                                                                                                          |
|-------|------------------------------------------------------------------------------------------------------------------------------------------------------------------------------------------------------------------------------------------------------------------------------------------------------------------------------------------------------------------------------------------------------------------------------------------------------------------------------------------------------------------------------------------------------------------------------------------------------------------------------------------------------------------------------------------------------------------------------------------------------------------------------------------------------------------------------------------------------------------------------------------------------------------------------------------------------------------------------------------------------------------------------------|
| 지구온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년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는 제네바에서 제 1차 세계기후회의를 개최함.</li> <li>- 이 회의에서 UNEP, ICSU(국제과학연합회의) 등의 기구가 협력하여 세계기후계획(World Climate Programme : WCP)을 만들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CP는 기후변화와 파급영향 연구, 데이터뱅크 설립과 정보교환계획, 각국 기후연구와 감시능력개발에 대한 지원등의 활동을 함.</li> <li>· 지구온난화현상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부분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기후변화의 대처에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함.</li> </ul> </li> <li>- 1988년 UNEP와 WMO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를 설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CC는 3개의 실무그룹을 조직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정보평가, 기후변화의 파급영향 평가, 대응전략 구축 등의 활동을 함.</li> <li>· 그 결과를 1990. 11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 보고함.</li> </ul> </li> <li>- UN은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결의함. 이 결의에 따라 1991. 2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1차협상이 개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6 세계정상 환경회담에서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함.</li> <li>· 최대현안은 온실가스 방출규제 문제임. 2/3는 선진국에서 방출되나 그 증가율은 개도국에서 현저함.</li> <li>·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예상됨.</li> </ul> </li> </ul> |
| 유해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폐기물 양의 증대와 이의 국제이동 확대로 이를 관리 통제할 필요성이 커짐.</li> <li>- 1987년 UNEP는 유해폐기물질의 환경측면관리를 위한 카이로 가이드라인 및 원칙(The Cairo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을 채택하여 정책개발의 기초를 제공함.</li> <li>- 그 후 UNEP 주도하에 34개국과 EEC가 참여한 바젤협정(Basel Convention)이 체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관리, 폐기물의 극소화 및 수출감축을 목적으로 함.</li> <li>· 폐기물 수출을 위한 사전통지, 합의 체제구축</li> <li>· 폐기물관리 합의가 없을 경우 비가입국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금지</li> </ul> </li> </ul>                                                                                                                                                                                                                                                                                                                                                                                                                                                                                   |

< 표 2> 환경문제의 UN 및 국제기구의 대응

| 환경문제        | 국 제 적 대 응                                                                                                                                                                                                                                                                                                                                                                                                                                                                                                                                                                                                                                                                                                                                                                                                                                                                                                                                                               |
|-------------|-------------------------------------------------------------------------------------------------------------------------------------------------------------------------------------------------------------------------------------------------------------------------------------------------------------------------------------------------------------------------------------------------------------------------------------------------------------------------------------------------------------------------------------------------------------------------------------------------------------------------------------------------------------------------------------------------------------------------------------------------------------------------------------------------------------------------------------------------------------------------------------------------------------------------------------------------------------------------|
| 유해화학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는 8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으며 매년 1천종 이상의 신 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옴. 이는 직접수출 또는 농산물·의복·자동차 등 상품의 형태로, 그리고 바람·물에 의해 지구전체로 이동</li> <li>- 대부분 장기적 영향 가능성에 대한 지식없이 사용 방출됨. 따라서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매우 큼.</li> <li>-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공동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함.</li> <li>○ 정보교환체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PTC(International Registry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 : 공업화학물질 정보관장</li> <li>·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농업용 화학물질 정보관장</li> </ul> </li> <li>○ 화학물질 규제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충제 사용·배분에 관한 국제행동규약(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sticides) : 살충제 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이 미흡한 개도국에서 이의 안전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FAO가 1985년 승인한 것임.</li> <li>· 1989년 FAO 규약과 런던 가이드라인은 사전동의 조항(Prior Informed Consent Provision : PIC)을 채택함. 자국내에서 인체건강·환경보호를 위해 금지·제약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출은 수입국과의 문서화된 합의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함.</li> </ul> </li> </ul> |
| 야생동식물<br>멸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환경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야기함.</li> <li>- 자연·자연자원 보존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IUCN)이 국제적인 종, 서식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약을 준비중임. 이는 UNEP 조약의 기초가 될 것임.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국제기금 창설임.</li> </ul>                                                                                                                                                                                                                                                                                                                                                                                                                                                                                                                                                                                                                                                              |
| 열대림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은행, UNDP, FAO 등은 개도국내 산림황폐화를 억제하고 열대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열대산림행동계획(The Tropical Forestry Action Plan : TFAP)을 만들. 사막화방지, 토지이용 개선을 위한 열대산림보호·재복구 등을 목적으로 함.</li> <li>- 1985년 국제열대림기구(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 ITTO)가 설치됨. 산림자원보존과 지속이용가능성의 확대, 생태계균형유지 등을 위한 정책개발</li> </ul>                                                                                                                                                                                                                                                                                                                                                                                                                                                                                                                                                                                                                               |

## 2. 4.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문제 접근방법

특정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까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지구전체에 무차별하게 파급되기 때문에 이의 대처 역시 범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개선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자국의 극심한 빈곤과 수많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협력없이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자료,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이 이를 개도국에서 이전하는 것이 환경문제 공동대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대개도국 개발협력접근방법의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최근들어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경제발전을 환경을 보존하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위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의 병행(Sustainable Development)」 접근방법이 국제적인 합의로 도출되고 있다. 지난 1987년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환경관리 접근방법은 개도국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공식채택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는 빈곤이 환경파괴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도국의 극심한 빈곤과 과다한 인구 및 높은 인구증가율은 지나친 방목·경작·벌채 등이 원인이며, 빈곤으로 인해 연료자원의 다변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의화획득을 위한 상업용 목재생산, 환금성작물 경작지 및 방목지개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자원이용은 사막화, 삼림파괴, 토양유실, 수자원부족, 야생동물멸종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장래의 경제발전 기초마저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퇴치가 환경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자원의 항구적 이용을 보장하여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초석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환경문제 접근방법과 함께 녹색개발전략은 경제원칙 안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OECD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 효율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주장에 따르면 환경문제 개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자원의 가격은 장기한계 사회비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규제의 방식은 경제수단과 병행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경제수단의 결정에서 오염자부담 원칙 등이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수요·공급관리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관리에서의 정부 정책의 실패가 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종종 부처간 조정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넷째, 자원관리와 환경정책 결정에서의 제도적 실패도 교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부서내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환경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접규제는 반드시 효율성의 기초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여섯째, 환경·경제정책은 상호통합되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에서의 간섭은 다른 부문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분석·확인되지 않으면 지속적 개발을 향한 진보는 퇴색할 뿐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1991년 OECD 환경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OECD는 지속적 발전과 환경관리의 핵심은 경제·환경정책의 통합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결정에는 반드시 환경고려가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위협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결합된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이 환경목표중 우선순위 선정의 최적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수단 즉 조세, 부과금등을 직접규제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책통합 달성의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개선된 정책통합과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으로 에너지, 농업, 수송 해안지역 관리부문을 예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OECD의 녹색개발전략 원칙은 시장원리의 바탕하에 직접규제를 다소 가미한 환경문제 대응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기구는 환경문제를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구에는 경제계, 생태계, 지구물리계의 세가지 순환흐름이 각각 독자적인 내부발전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중 경제계는 자연자원을 소비·자본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순환계에 압력을 준다. 그러므로 경제계는 모든 순환계의 제약을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하는데 경제계내의 가격, 인센티브 체제는 이를 원활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등 경제계의 활동은 직접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의 국제기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 2. 5. 선진국 원조활동에서의 환경정책

지구환경문제는 그것이 갖는 상호의존성 때문에 개도국을 포함한 범세계적 차원에서 노력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과 기술의 공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환경보존과 개선의 능력이 미흡한 개도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환경문제 대응노력에 동참토록 유도하는데 선진국 자금과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조프로젝트·프로그램이 환경문제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조활동이 환경문제와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환경문제에의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9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회담에서 1990년대 개발원조의 3대 목표중 하나로 '환경유지'가 선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DAC 회원국은 환경문제가 원조활동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환경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원조활동과 환경정책의 접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AC 선진국들은 공식적이든(법률 또는 행정규칙의 채택) 비공식적이든(비구속적인 의사표명 또는 내부제안) 원조기관의 의사결정에서 환경문제를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조기관내에 환경문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경정책을 수립·시행케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DAC 회원국은 원조활동과 환경문제를 접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개발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상의 주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개도국의 환경평가·정책·프로그램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환경계획·

관리기구 능력배양 지원

② 환경영향평가와 원조프로젝트·프로그램 기준의 개선 및 조화

- ③ 개도국 환경·자연자원의 보호·복구를 위한 특정전략·프로그램의 시행
- ④ 환경조치와 관련 금융의 경제적 비용편익의 명확한 분석
- ⑤ 프로그램원조에 대한 부문별 접근의 역할을 모색
- ⑥ 여성의 환경적 관계에 대한 유의와 여성의 환경관리 능력 증대
- ⑦ 빈곤층에 대한 환경프로젝트·프로그램의 영향에 유의
- ⑧ 지구환경문제에서의 이해관계에 대한 원조체제의 기여를 고려

이상의 각 요소들 가운데 DAC 회원국의 환경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방향은 첫째, 환경개선·복구를 위한 특정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수행, 둘째, 원조프로젝트·프로그램의 환경영향 평가방법 및 제도의 도입, 셋째, 개도국 환경문제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한 수단강구 등이다. 그중 첫번째 것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토양보존 부문에서만 일부 시행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능력제고 역시 최근에야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을 뿐이다. 다만 환경평가제도는 18개 회원국중 11개국이 공식도입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 모두 전문가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조활동상의 환경정책을 국별로 보면 먼저 환경정책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채택한 미국의 경우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내에 환경조정관을 두어 환경·자연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AID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오직 자연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서 개도국이 그들의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존·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안정된 장기경제성장을 도모케 하는 것에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표하에 AID는 지속적인 생산, 자연생태계의 유지, 환경개선에 의한 인간의 기본적욕구의 충족의 세가지 환경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원조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원조활동상 환경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째, 지속적 개발의 관점에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고 둘째, 개도국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꾀하며, 셋째, 차관공여의 초기에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을 보면 개도국환경의 보존·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의 용자를 대폭확대

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정비하여 여타 원조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89년 자금원조의 주체적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은 원조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16개 대상사업부문을 선정하고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 검토목록을 만들어 사업의 계획·준비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호주는 원조기관인 AIDAB(Austral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Bureau) 내의 환경조정그룹(Environmental Co-ordination Group)이 환경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①원조활동과 환경보호·자원관리에 대한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②개발활동의 환경영향을 평가감시하며, ③개도국의 환경보호·자원관리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혜국과 협력하는 것 등이다.

다음 선진국 원조활동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환경정책부분인 환경평가정책을 살펴보자. 원조활동상의 환경정책에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방식은 원조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에 환경고려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통합을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는 환경평가인데 OECD는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특히 1986년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Measures Required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nd Programmes)에서는 환경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7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3가지 즉, ①원조활동에 환경평가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 ②동정책 수행에서의 기존절차·관행의 적합성을 검토할 것, ③환경평가 과정을 도입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할 것 등은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외 환경정책을 수행할 기관의 설치, 이에 대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 개도국의 환경문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등 나머지 4개의 행동방침도 많은 DAC 회원국이 채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AC 회원국중 그들의 원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라는 미국·일본 등 11개국이다. 나머지의 대부분도 채택과정에 있다. 이들의 환경평가방식은 대체로 다음 3가지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프로그램의 분류, 둘째, 완전한 환경평가가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초기 환경심사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 IEE), 셋째, IEE 결과에 따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프로젝트·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 EA 또는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 등이다. 이러한 환경평가 정책에 대해 지난 1985년 OECD의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ssistance)은 유용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환경평가작업시 ①토양 및 토양보존, ②사막화 진행지역, ③열대림과 식물생장 보호, ④수자원, ⑤어류·야생동식물서식지, ⑥역사, 고고학, 문화 등의 측면에서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⑦지속적인 공업발전과 도시팽창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업활동인구 집중지역, ⑧유목민 등 환경문제에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반드시 환경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대상사업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지속사용 가능한 자원의 변화(토지변화, 농촌개발, 목재생산 등), ②경작·어획에서의 변화(신작물 도입, 기업형 경작 등)와 농업에서의 화학물질사용(농약, 비료), ③수력자원의 이용(댐, 관개·배수프로젝트, 물공급 등), ④인프라스트럭처(도로, 교량, 공장, 항만, 철도, 파이프라인 등), ⑤공업활동(금속, 목재가공, 화학, 전력, 시멘트, 정제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등), ⑥추출산업(광업, 석유·가스 등), ⑦폐기물관리·처분(하수시스템, 가정쓰레기, 위험폐기물 처리등).

이상의 1985년 권고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등을 비롯한 8개국이며, 여타국도 OECD 목록을 환경평가가 필요한 원조활동을 식별하는데 유용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도국의 환경문제 대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을 보면 그 형태는 대체로 국별환경현황의 파악과 보존전략의 수립, 환경관련기구의 설립, 환경교육훈련, 관련 자료의 정비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개도국의 환경문제 대처능력증대를 위한 지원내역

| 부 문                      | 지 원 내 역                                                                                                                                                                                                                                                                                                                       |
|--------------------------|-------------------------------------------------------------------------------------------------------------------------------------------------------------------------------------------------------------------------------------------------------------------------------------------------------------------------------|
| 국별 환경<br>현황 파악과<br>보존 전략 | <p>- 개도국 정책수립의 지원을 위해 국별환경보고서나 국별보존전략보고서를 작성함.</p> <p>○ 미국 : 원조대상국의 국별환경현황(Country Environmental Profiles: CEP)작성에 매우 적극적임. AID는 문헌연구(phase I)와 현장조사(phase II)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약 49개국, 후자는 19개국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함.</p> <p>○ 일본 : 국별환경연구와 함께 대상국과의 환경관련 정책대화를 중시함.</p> <p>○ 영국 : 국별환경연구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음. 개도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별보존전략도 수립해 줌.</p> |
| 기구 설립                    | <p>- 개도국의 환경관리에는 명확한 책임과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가진 환경담당기구의 설립·강화가 필수적임.</p> <p>○ 미국 : 주로 중남미에서 기구설립활동을 하고 있음. 파나마의 자연자원 기구 설립에 대한 지원, 역내기구에 환경관리부서 설치지원 등을 함.</p> <p>○ 일본 : 태국에 환경연구훈련센터, 중국에 환경보존센터 설립 준비중</p>                                                                                                                         |
| 환경 교육<br>훈               | <p>- 교육훈련은 개도국의 환경문제 대처능력 제고의 핵심요소임. 교육훈련,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해 민간인에게 환경지식·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관리들에 대한 환경훈련과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p> <p>○ 미국 : AID는 스미소니언이 중남미에서 대학교과정의 훈련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고 있음.</p> <p>○ 일본 :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개도국관리에 대한 6주 과정의 환경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JICA는 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26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함.</p>              |

출처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1990.

### III. 결 론

지구환경문제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로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환경보호·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활성화되고 있다. 선진국 원조기구인 DAC도 예외는 아니어서 회원국이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다양한 권고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최근 대부분의 DAC 회원들이 그들의 원조활동과 환경문제를 긴밀히 통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된 방향 및 효율적 수단이 속속 개발되었으며 특히 원조프로젝트의 환경평가 부분은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원조활동과 환경 고려의 통합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많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문제에의 대처는 무엇보다도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가장 중요하나 선진국 원조규모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그들의 ODA 규모가 국제적 합의인 GNP 0.7%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원조의 대상사업에 환경개선을 위한 특정프로젝트·프로그램의 수행도 다수가 포함되어야 하나 아직 산림·토양보존 등 일부 부문에만 원조공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환경문제 대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원활한 도출을 위해 선진국의 대 개도국 기술이전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환경관련의 중요기술은 물론 일반기술마저도 이전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원조활동과 환경문제의 통합에서 가장 진전이 있었던 환경영향 평가 부문도 환경관련 전문가의 부족, 공여국과의 대화 부족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자금·기술공여의 체제를 구축·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조활동에 환경문제를 고려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조가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의 병행」에 합치되도록 공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로 된 이상 이에 부합하는 원조정책의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환경관련 전문가를 양성-전문가의 도움없이 원조활동과 환경정책의 원활한 통합은 불가능하므로 연수등을 통해-해야한다. 둘째, 원조활동에 대한 분야별 환경정책 고려의 지침을 만들며, 담당자를 배치하는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원조활동경험이 일천하고 환경정책의 경험이 전무하므로 당분간 국제기구의 협조하에 원조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위한 봉사단, KOICA, NGO, 한국의 역할 및 방법에 관해 토의 하십시오 ??

# 유엔사무국 제시 어젠다 21 자원조달 방안

## < 국제적 조치 >

### ○ 기존제도의 확대

- 다국간 ODA(세계은행내 GEF 사업확대 등)<sup>1</sup>
- 이국간 ODA

### ○ 새로운 자금확보책

- SDR (IMF의 특별인출권)의 활용
- 지구 공공재 사용요금 징수제도(공해상 어로행위 등에 대한 요금부과)<sup>2</sup>
- 환경·채무스왑(natural debt swap)
- 오염배출권 매매
- 환경우표(통상 우편요금에 부가하여 부가분을 국제기금으로 수납)
-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기부

## < 선진국의 국내조치 (ODA 포함)>

### ○ 기존제도의 충실

-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변경(국방예산 삭감분을 환경재원으로)
- 자연보호 등을 위한 오염세 징수분을 환경에 우선 할당

### ○ 새로운 자금확보책

- 환경세(CO2의 배출량에 비례한 과세, <예> 네덜란드의 CO2세)
- 환경목적세(사용처를 환경에 한정된 세를 신설 또는 증세)
- 오염배출권 매매(국가 몫의 오염배출권을 민간기업에게 판매)
- 환경채 발행(장래세대의 세금으로 상환)

주 : 1)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운영되는 지구 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 GEF). 1991년 업무개시하여 3개년간 13억 달러가 책정.  
2) 개도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개도국 정부가 자국통화로 자연보호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1984년 볼리비아를 시발로 지금까지 총 18건, 99백만 달러의 환경·채무스왑 실시

# Nature - Debt Swap

